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(02)738-6898 / 전송 (02)720-2003

문서번호 국행삼 65065 -

시행일자 1996. 12. . (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취급		행정조정실장	국 무 총 리
보존			
조정관	14	6	李
심의관	14	총괄심의관	14
과 장	14		
기안	김 성 환		협 조

제목 : "「장애인복지시책」'96 실적평가와 '97추진계획"추진철저(국무총리지시제1996- 호)

1. '96. 12. 26(목) 개최한 제1차 「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」(위원장 : 국무총리)에서 심의·확정한 「장애인복지시책 '96실적평가와 '97추진계획」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해당기관별로 '97. 1.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는 '97. 1. 20까지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람.

나.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,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·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.

다. 각 부처는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람.

2. 아울러 12. 26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.

붙임 : 1. 「장애인복지시책 '96실적평가와 '97추진계획」 1부.

2. 「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」 개최결과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가07~가54

제1차 「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」 개최결과

□ 회의개요

- 일시 : '96. 12. 26(목) 10:00~11:45
- 장소 : 국무총리대회의실
- 안건 : 「장애인복지시책」 '96실적평가와 '97추진계획
- 참석
 - 위원장 : 국무총리
 - 정부위원 : 복지부 · 교육부 · 문체부 · 노동부 · 총무처 · 공보처
장관 및 재경원 · 내무부 · 정통부 · 건교부 차관
 - 민간위원 : 김학묵, 서광윤, 장기철, 나종천, 안세준, 김신웅,
권도용, 박승명, 정덕환, 이승환, 임통일 위원

□ 민간위원 주요 발언요지 및 총리님 지시사항

- 김학묵 위원(뇌성마비복지회 회장)
 - 제시된 대책(안)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 본인을 비롯하여 일선기관의 공무원까지 적극적 태도가 필요
 -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가져옴
 - 장애인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, “시혜 · 혜택”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
- ⇒ 국무총리 지시 : 앞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이 시혜 · 혜택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(공통)

- 서광윤 위원(장애인재활협회 명예회장)
 -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의 주관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
 - 장애예방을 위해 “모자보건사업” 더욱 강화필요
- 나종천 위원(맹인복지연합회장)
 - 장애인 등록율 제고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내무부 전산망, 의료기관, 장애인단체등이 함께 협조해야 함
 - 중·장기 장애인복지예산 투자계획 수립필요
 -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복지 전담부서(계·과) 설치필요
 - 맹인 안마사의 침시술행위 허용 명문화 필요
 - 장애인의 휴대폰 이용료 할인 필요

⇒ 국무총리 지시 :

- 장애인 복지예산 과감한 증액(재정경제원)
- 행정전산망을 통해 장애인 등록율 제고에 협조(내무부)
- 휴대폰이용료 감면 적극 검토(정보통신부)
- 안마사의 침시술허용 명문화문제 긍정적 검토(보건복지부)

- 임통일 위원(교통장애인협회 회장)
 - 장애 재활이전에 장애예방운동 활성화 필요
 - 「벤틸레이터」 장비 대여제도 도입필요
 - 교통사고 환자 지정진료비가 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함

⇒ 국무총리 지시 :

- 벤틸레이터 장비 대여제도 검토(보건복지부)
- 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(건설교통부)

- 권도용 위원(한신대 교수)
 - “임산부 · 영유아 등록제”를 도입하여 정기검사 필요
 - 장애발생예방을 위해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설치 활성화 필요
 - 직업재활을 위해 적절한 직업능력평가, 직업훈련 강화
 - 사회통합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
토록 교사의 인식개선 및 영 · 유아 조기 통합교육 실시
 - 장애인의 대학특례입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여건 마련 필요
 - 소득보장을 위해 생활보호제도의 체계적 접근 필요

⇒ 국무총리 지시 :

- 임산부 · 영유아 등록제등 전의사항을 관심있게 검토(보건복지부)
- 특수학교 주변 교통표지판을 시 · 청각 장애인학교외에도 정신지체 장애인 학교등으로 확대(경찰청)

- 안세준 위원(농아복지회 회장)
 - 청능훈련의 내용 개선 및 필요시 수화교육 병행 필요
 -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화능력 제고가 필요하며, 학생들의 문장구사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교사들의 노력 필요
 - 전문성을 위해 농아학교 교사는 농아학교에만 근무토록 해야 함
 - 수화교육 책자, 비디오 제작비 지원 요망
 -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 FAX 설치요망

⇒ 국무총리 지시 :

- 농아교육을 위한 책 · 비디오 발간비등 지원(재경원)
- 공중팩스 설치(정보통신부)

- 장기철 위원(지체장애인협회장)
 - 보건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함
 - 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 실업수당 신설

- 중증장애인의 보호자(배우자)에 대해 취업·생업보장책 강구
 - 각종 매점, 자판대 설치허가시 장애인에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 방안 요망

⇒ 국무총리 지시 : 장애인 실업수당, 중증장애인 보호자 생계 대책강구(보건복지부, 노동부)

- 박승명 위원(특수교육협회장)

- 사립특수학교 예산지원 필요
- 맹인안마사 침시술행위 허용 명문화
- 특수학교 고등부과정에 직업훈련 지원강화 필요

⇒ 국무총리 지시 : 특수학교 고등부 직업교육 강화(교육부)

- 김신웅(정신지체인 애호협회장)

- 노동부의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소규모화 하여 다수건립 필요

- 정덕환(에덴복지하우스 이사장)

-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차량 보급 확대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 지향적 의식형성 필요

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안건

『장애인 복지시책』 '96 실적평가와 '97 추진계획

1996. 12

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

목 차

I. 금년중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복지대책 추진경과	2
II. 장애인 복지시책 '96년 실적평가	3
III. '97년 주요 추진계획	4
1.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	5
2. 장애인고용 확대방안	10
3. 장애아 특수교육 발전방안	12
IV. 부처별 조치사항	15
※ 참 고 : '96년 장애인 복지대책 주요추진실적	17

< 장애인 복지실태 >

※ 「'95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」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매5년마다 실시)에 따른 것임

○ 장애인 인구

- 추정장애인 : 1,053천명 (전국민의 2.35%)
 - 지체 704, 청각·언어 193, 정신지체 81, 시각 75
 - '90년대비 97천명 증가
- 등록장애인 : 405천명 ('96.10 현재)

○ 일상활동실태

- 전체 장애인의 약 41%가 일상활동에 타인의 도움 필요
- 장애인 활동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 순서
① 교통수단이용 불편 ② 동반자 없음 ③ 편의시설미비
 - * 편의시설 설치율 : 27%
- 필요한 보장구를 소지하지 않은 장애인 : 11%

○ 취업 및 경제상태

- 취업율 : 15세이상 전체 장애인중 32%
 - 주로 자영업(40%)에 종사
- 직업훈련 이수율 : 2%
 - 15~29세 장애인중 직업훈련 희망비율 : 42%
- 월평균 소득 : 약 91만원 (일반가정의 50%)
 - 비장애인에 비해 월평균 11만원의 생활비 추가 부담

○ 특수교육실태 ('96)

- 대상자 (5~17세) : 225천명
- 특수교육수혜 현황 : 48천명(21%)
 - 특수학교 : 109개교 22천명
 - 특수학급 : 3,533학급 26천명

I. 금년중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복지대책 추진 경과

- 「삶의 질 세계화」를 위한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발표 ('96.3.28)
 - '96.2.15 발표한 「국민복지 기본구상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중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노인·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「노인·장애인복지 종합대책」을 발표
-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국무총리 「국정좌담회」 개최(4.22)
 - 장애인 주간(4.20~4.26)을 맞아 장애인단체 대표등 관계자 17명을 초청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등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50여건을 청취
- 「국민복지추진위원회」에서 장애인복지대책 추가발표 ('96.5~'96.9)
 - 「국정좌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」 마련 (1차 위원회)
 - '96~2000년까지 총 3,800여억원을 투자하는 「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」을 마련(1차 위원회)
 - 기타 「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」 및 「법령·제도개선 계획」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수준을 제고 (2·3차 위원회)
- 「행정쇄신위원회」에서 기타 장애인복지개선방안 발표
 -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「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장애인 등록사항 관리」 ('96. 6)
 -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정부간행물을 점자로 제작·보급 ('96. 10)
 - 시각 및 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통행료 1/2 감면 방안 ('96.11) 등 마련

II. 장애인 복지시책 '96년 실적평가

'96년은 「국민복지 기본구상」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통하여 가족·이웃·지역사회·국가의 공동참여를 바탕으로 한국적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 한 해였음

① 각종 법령·제도의 적극적 정비

- “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”의 제정 추진
-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사제 도입결정
- 공공직업전문학교의 장애인직업훈련 의무부과제 실시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 골격을 갖추어 감

②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시책을 강화

-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'97년도 장애인 복지관련예산(보건복지부 소관)을 39% 증액하였으며
- 장애인 특수교육과 직업훈련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반을 강화

③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정비·강화

-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」를 설치
- 교육부에 특수교육담당관실 설치, 보건복지부에 “장애인복지심의관”을 신설키로 하여 장애인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

④ 지역사회중심의 협동적 프로그램 활성화

- 장애인 재가봉사센터,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등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적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

⇒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생활안정·재활사업·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정책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,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

III. '97년 주요 추진계획

< 추진 방향 >

그간의 장애인 관련시책이 복지서비스의 양적확대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 관련시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

- **근로능력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**
 - 복지서비스의 주체를 국가와 함께 가족·기업·사회단체 등으로 다원화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
- **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마련**
 - 장애인 복지시책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기반화립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함
- **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책에 역점**
 - 장애인에 대한 교육·고용·환경개선 등 제반시책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되,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
- **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예방시책의 강화**
 -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재활·교육·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, 장애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각종 시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

1.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

(* 표시는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관련단체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반영한 항목임)

1) 장애범주 확대방안 마련

- 지체, 시각, 언어, 청각,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이외로 장애 범주를 확대
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'97년중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 추진

2) 장애인의 경제적부담 경감시책 대폭확대

- 각종 공공요금 대폭 할인 및 감면
 - 장애인명의의 전화에 대한 전화이용료 할인확대 *단체공통
 -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시내·외 통화료의 20~40% 감면
→ '97.4.1부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화이용료의 50%할인
 - '97년 시행예정인 114 안내 유료화시 전액 면제
 -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 *단체공통
 - 현재 “통일호 이하” 요금 50% 할인 → '97.3.1부터 “무궁화호” 도 50% 할인(“여객규정” 및 “장애인복지법 시행령” 개정)
 - 시각·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전액면제
 - '97 상반기중 시행(「방송법 시행령」 개정)
 -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/2감면
 - 고속도로 할인카드개발등 기술적 문제 해결후 '97 하반기 실시
-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면제 확대 *뇌성마비복지회
 - 뇌성마비 유아용 유모차, 특수의자, 스포츠용품을 면제품목에 추가 ('97 상반기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)

-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 지급 확대
 - '96 : 1급 및 2급중복장애인 15천명에게 월 40천원씩 지급
 - '97 : 1급 및 2급장애인 (거액보호,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) 42천명에게 월 45천원씩 지급
- 중·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
 - '96 : 중·실업고생 전원 및 인문고생 성적상위 30% 대상
 - '97 : 인문고생도 전체로 확대 ('98부터 급식비, 교재비등 포함)
-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사기준 완화 *장애인재활협회
 - 1~3급 장애인의 2,000cc이하 승용차는 생활보호대상자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 ('생활보호법'에 의한 '97 '생활보호 사업지침'에 반영)

3) 재활 및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확대

-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개발·시행 *맹인복지연합회
 -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
 -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능훈련 강화등
- 재활에 필요한 점자번역사, 점자교정사, 보행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및 지원
 - 국가공인자격제도 또는 민간자격제도로 확립
- 장애인 공동가정(그룹홈) 보호제도 실시 *장애인부모회
 - '97년에 5개소(인천, 광주, 경기, 충북, 전남) 지원
 -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기 시행중

4) 시설지원 및 장애예방등

- 시각·청각 장애인학교 주위에 특별히(보조)교통표지판 부착
 - '97상반기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'97.6까지 부착완료
*교통장애인협회
- 수학능력시험 전형시 장애학생 최대한 배려
 - '97년 수능시험부터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 또는 음성평가 도구 제공
 - 지체부자유학생은 수능시험장소 별도 배려 (경사로 설치학교, 특수학교 등)
- 장애인복지시설등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 등의 제한 철폐
 - 현재 동일 법인내의 동종시설 근무경력만 인정
→ '98예산부터 다른 법인의 동종 시설 근무경력도 인정 ('98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반영) *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
- 사회복지시설의 고용보험금·산재보험금·환경개선부담금 지급 비용을 '98예산부터 지원 *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
- 장애발생 예방사업 강화
 - 「선천성 대사이상검사」를 저소득층 신생아에서 모든 신생아로 확대 ('96 : 36천명 → '97 : 610천명)
 - *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: 신생아때 혈액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를 예방하는 검사
 - '97년에 생활보호대상 임산부와 영.유아 각각 15천명에게 무료건강진단 실시
- 재가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
 - 장애인 복지관 : 현재 41개소 → '97년 55개소(14개 신설)
 - 재가복지봉사센터 : 현재 24개소 → '97년 28개소(4개 신설)
 - 주간·단기보호시설 : 현재 5개소 → '97년 10개소(5개 신설)

5)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

○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활성화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면 '97년중 시행령·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'98년부터 시행(동 법안은 12.18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며,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토록 규정)
- '97 상반기중 「장애인주차장」 설치실태 일제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추진 *부름의 전화
- 장애인유도블록 설치기준 및 장애인 화장실의 충분한 공간 확보 등을 관련규정에 명시 *부름의 전화

※ 동 법안의 주요내용

-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·설비·정보에 대한 장애인 등의 동등한 이용권리 규정
-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편의시설부담금,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
- 보건복지부에 「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」 설치
-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자동차에 과태료부과등

○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강화

- 맹인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 지원 : '96년 19대 → '97년 34대
-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 증액지원
('96년도에 삼성전자,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특수차량 158대 기증)

- 맹인안내견의 공공시설·숙박시설·교통수단에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규정보완 *맹인복지연합회
 - 맹인안내견 공인제도 및 안전관리기준 등 시행방안 검토

○ 농아인을 위한 공중팩스 설치

- 장애인단체등으로부터 설치장소 등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치운영 ('97상반기중) *한국농아복지회
 - ※ '95.12~'96.6까지 6개월간 공항·호텔등 다중이 모인 10개소에 공중팩스 시범서비스 결과 이용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중단된바 있음

6)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

- '9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N 아·태 경제사회이사회(ESCAP)의 「아·태 장애인 10년 사업 중간평가회의」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, 장애인 재활의욕을 불돋우는 계기로 추진
 - 장애체험 등 각종 행�크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유도
-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「전국장애인체육대회」를 '98년부터 시·도별로 순회개최도록 추진
- 「올해의 장애극복상」 제정
 - 우리나라가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, 각분야에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선정하여 매년 4.20(장애인의 날)에 시상

2. 장애인고용 확대방안

- * '96.5.31 발표한 「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투자계획」 ('96~2,000)에 의거한
'97년도 추진계획임

1)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

- 「장애인 종합 직업재활센터」 2개소 건립 (분당,부산)
 - 중증장애인 위주의 직업훈련·재활·연구등 종합적인 직업재활 기능 수행 ('97 착공 ~ '99.2 준공예정)
- 『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』 건립 추진
 - 텔레마케팅·녹음속기등 적합직종 개발, 적응훈련실시등을 위하여 과학기구등 최신장비 구비
 - 서울인근지역에 2,000평규모로 총130억원 투입 예정('97~'99)

2) 장애인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지원강화

- 장애유형별 직업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「직업능력 평가센터」 2개소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시범설치
 - ※ '97년~2000년 15개소 설치, 의료전문가·심리평가사·직업평가사배치
- 「특수학교 3+1」 학교를 장애유형별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·육성
 - '96 : 8개교지정 → '97 : 8개교지정 (2,000년까지 20개소지정)
- 공공직업전문학교 장애인 직업훈련의무부과 및 지원
 - 시·도별 1개소씩 15개 훈련기관 지정, 장애인 5%이상 선발
 - 편의시설비 2억원 및 훈련교사 수당지원
- 민간직업훈련원, 안마수련원등을 인정직업훈련원 수준으로 지원·육성
 - '96년 5개소 지정 → '97년 6개소 지정 (2000년까지 15개소 지정)

3) 사업체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

-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 지속 추진
 - '96년 3개소 118억원 융자 → '97년 5개소 추가선정(150억원)

-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
 - 작업지도교사 배치 및 장애인에 대한 훈련장려금 등 지급
 - 보호작업장 실태조사결과 분석후 세부기준마련중 ('97.3부터 시행)
 - ※ 보호작업장 156개소를 대상으로 '96.11부터 노동부, 복지부, 장애인공단합동조사
- 장애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비용지원
 -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고용시 수화통역수당 : 1회 5만원
 - 정신지체인 작업지도수당 : 월 50만원 (장애인 5명담당 기준)
-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
 - 무상지원 :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(최대 2억원)
 - 융자지원 : 장애인고용시설 · 장비구입비의 50% (최대 10억원)
-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전문취업상담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시 취업알선수당 지급 추진 (1인당 3만원) *정신지체인애호협회

4) 정부부처 ·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비율 확대

- 장애인 의무고용비율(2%)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조치 시행
 - 전 해당기관에서는 결원보충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도록 노력
 - 총무처 공채인원중 장애인 구분모집비율을 현행 2%에서 3%로 상향조정 ('97년 공무원시험 공고에 반영)
 -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 및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장애인 채용비율을 3%이상으로 상향조정(총무처가 「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지침」 마련)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공무원 수('96.11.30 현재) : 2,878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5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0.88% → '96.11월말 0.97%로 증가 - 고용의무대상 76개기관중 노동부등 5개기관이 의무를 달성 ○ 정부투자 · 출연기관의 장애인 근로자수 : 현재 1,187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5 장애인고용률 0.77% → '96.11월말 0.83%로 증가 - 고용의무대상 43개소중 석탄공사등 6개소가 고용의무 이행 |
|--|

3. 장애아 특수교육 발전방안 ('97~2001)

- * '96.12.3 발표한 「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」 ('97~2001)에 의한 '97년도 추진내용임
- * 장애인 재활협회, 장애인부모회 등의 다수 건의내용 반영

1) 장애아 특수교육 확대

- 중도장애인의 특수교육 확대 실시
 - 대상아동 42천명중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20천명에게 교육수혜기회를 확대
 - '97년 특수학교 7개교 신설 → 2001년까지 20개교 신설
(대상장애인 10천명 수용)
 - 재택순회교육 확대실시 : 나머지 통학이 곤란한 장애아를 위해 교사가 가정·병원·시설 등을 순회하며 교육실시(대상장애인 10천명)
- 경도장애인의 교육수혜대책
 - 대상아동 183천명중 일반학급에 편성된 157천명을 위해 「학습도움실」 운영
 - 학습도움실에는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 일반교과교사와 협력학습 병행('97년 132명 → 2001년까지 5,458명 배치)
-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 설립·운영
 - 유치부과정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치료교사를 확보하여 교육과 치료를 겸한 종합프로그램 운영
 - '98년 개교목표로 국립 1, 공립 9개소를 설립하고, 사립유치원에 특수과정 설치시 운영비 전액 지원
 - 109개 특수학교중 2001년까지 90개교에 년차별로 유치부 과정을 설치하고 450개 학급에 총 2,250명 수용

2)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

- 원격학사제 도입
 - 방송통신대를 활용하여 원격학사제 운영 ('98년도부터 시행)
 - 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원 입학 허용

- 재활전문대학 설립 확대
 - 국립재활전문대학 설치 시범운영
 - 2000년 개교예정, 11개 학과(직업재활 7개 학과, 재활지원 4개학과)
370명 수용
 - 사립은 기존대학 부설로 설립 적극 권장

3) 직업교육 강화

-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
 - 실업계고교의 2+1제를 특수학교에도 적용
 - 재학중 취업허용, 취업졸업제 도입등 학교·산업체간 이동이 자유로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
-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
 - 공학적 메카니즘이 동원된 첨단 훈련장비를 3개 국립특수학교에 시범 설치 ('97년 모형개발연구를 거쳐 '98년에 설치)

4) 교원양성체제의 개선

-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로 전환
 -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특수교육전공 설치
 - 11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우선 개설
 -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현직교사 연수과정 설치 권장
- 특수학교 교원 채용시 초·중등 자격제한 완화
 - 특히 정신지체·정서장애학교 등 중도장애아 학교의 경우 초·중등 구분없이 교사 채용
- 학습도움실 교사, 치료교사, 특수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신·증설
 - 학습도움실 교사는 별도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(교육부직속 국립특수교육원 활용)
 - 8개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특수유치원 교육 전공 설치

⇒ 이상의 「특수교육 발전방안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'97년중 「특수교육진흥법」 전면 개정

'97년은 OECD 회원국이 된 첫해로서 21세기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지향하며 정부가 추구해온 복지공동체 구축노력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시점임

특히 장애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아·태 장애인 10년(1993~2002)사업의 중간년도로서 그간의 장애인관련시책을 중간 평가하고 21세기 선진사회에 걸맞는 법령·제도의 완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 환경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

정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말까지 관련단체와 정부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증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< 작업추진계획 >

- '97. 2월중 : 실무작업반 구성
 -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참여
- '97. 3~5월 : 중·장기 장애인복지증진대책(안) 마련
- '97. 6월중 :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심의
- '97. 7월이후 : 연차별 예산반영 및 법령·제도개선 작업 추진

IV. 부처별 조치사항

주 요 내 용	주관부처	협조부처
1.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		
1) 장애범주 확대방안 마련	보건복지부	재정경제원
2)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공공요금 대폭할인 및 감면 ○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면제 확대 ○ 생계보조수당, 자녀교육비 지급확대 ○ 장애인 생활보호기준 완화 ○ 중·고생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○ 생활보호 심사기준 완화 	정통부, 철도청, 공보처, 건교부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"	
3) 재활 및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○ 점자번역사, 교정사, 보행교사 자격 제도 도입 ○ 그룹홈제도 실시 	보건복지부 " "	
4) 시설지원 및 장애예방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청각 장애인학교 주위에 보조 교통표지판 부착 ○ 수학능력시험 전형시 장애아 최대배려 ○ 장애인복지시설등 종사자 근무경력 인정 ○ 사회복지시설의 고용보험금, 산재보 험금, 환경개선부담금 '98부터 지원 ○ 장애발생 예방사업 강화 및 각종 복지시설 확충 	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"	재정경제원 "

주 요 내 용	주관부처	협조부처
5)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○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-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○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강화 ○ 농아인을 위한 공중팩스 설치	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복지부, 문체부 정보통신부	전부처 공동
6)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○ 「아·태 장애인 10년사업 중간평가회의」 시 각종 프로그램 마련 ○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시·도 순회개최 추진 ○ 「올해의 장애극복상」 제정	보건복지부 " "	공보처 문화체육부 "
2. 장애인 고용확대방안		
1)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 2) 장애인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지원강화 3) 사업체 고용여건조성을 위한 지원확대 4) 장애인 공무원등 채용비율 확대	노동부 " " 전부처 및 공공기관(공통), 총무처	교육부 " 보건복지부 "
3. 장애아 특수교육 발전방안		
1) 장애아 특수교육 확대 2)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3) 직업교육강화 4) 교원 양성체제의 개선	교육부 " " "	

《 참고 》

'96 장애인복지대책 주요 추진실적

1) 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

-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 지급
 -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15천명에게 월 4만원 지급
 - '97 : 1급 및 2급장애인 (거택보호,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) 42천명에게 월 45천원씩 지급
-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융자
 - 현재 700가구에 가구당 1,000만원 → '97년 1,200만원 지원
- 저소득 장애인(자활보호대상자) 의료비 지원
 - 외래진료비의 50% 및 입원비 전액
- 중·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
 - 현재 초.중.실업고생 및 인문고생 성적상위 30% 지원
 - '97년 전 인문고생 포함, '98년부터 급식비, 교재비등 포함

2)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시책

- 「장애인먼저」 운동 실천 생활화
 - 현재 195개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 안내창구 설치, 점자통장 개설, 직원수화교실 운영, 장애인용 버스운영등 운동전개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 (12.18, 국회폐회로 법사위 계류중)
 - 장애인 등의 시설.설비.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
 -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편의시설부담금,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
 -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
 -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자동차에 과태료부과등

-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(주차장법령 개정 : '96.6)
 - 건물부설주차장 주차구역을 현재 1%에서 1~3%로 확대
 - 노상·노외 주차장에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- 장애인용 공중전화 설치확대 ('96년 2,347대) 및 장애인 택시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첨단무선호출시스템 장착택시 시범운영 계획
- 건립중인 국립 청소년수련시설(평창, 천안)에 편의시설 설치하여 장애아동들의 캠프장소 마련 중
- 수화통역사 자격제도 신설
 - 한국농아복지회에서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키로 하고 사업 시행계획 마련중 ('97.2 제1차 자격시험 실시예정)
 - '97년부터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(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 반영)

3) 재활 및 장애예방

- 재활공학 기술개발지원등 보장구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
 - '96년에 동력의수등 첨단보장구 연구개발 사업진행
 - 보건복지제도개혁과제로 '보장구 활용촉진방안'을 마련중
- 재활의학과 설치활성화
 -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1개소중 74개소에 재활의학과 설치 (설치율 56%)
- 장애발생예방사업 강화
 -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저소득층 신생아에서 모든 신생아로 확대
 - '96년 36천명에서 '97년 610천명으로 확대
 -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('97년 연인원 4,631천명)

4) 장애인 고용촉진

① 제1회 「장애인고용촉진의 달」(9월) 고용촉진행사 집중전개

- 『1사1장애인 채용운동』과 『장애인채용박람회』, 『장애인 고용촉진대회』 및 장애유형별 『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』 개최로 고용증대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
※ 이러한 노력을 통해 '96.9.30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.45%(10,054명)로 '95년말 0.43% (9,582명)보다 0.02% 증가

②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증대 역할 수행

- 장애인공무원 수('96.11.30 현재) : 2,878명
 - 적용대상 296,848명의 0.97 %, 고용의무인원의 48.8 % 수준
 - 고용의무대상 76개기관중 노동부등 5개기관이 의무를 달성
 - '95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0.88%(2,565명) → '96.11월말 0.97%(2,878명)로 증가
 - 고용의무달성 국가 및 지자체 : 노동부, 국가보훈처, 산림청, 철도청, 충북교육청
- 정부투자·출연기관의 장애인 근로자수 : 현재 1,187명
 - 적용대상직원의 0.83%, 고용의무인원의 41.1%수준
 - 고용의무대상 43개소중 석탄공사등 6개소가 고용의무 이행
 - '95 장애인고용률 0.77%(1,113명) → '96.11월말 0.83%(1,187명)로 증가
 - 고용의무달성 투자·출연기관 : 장애인고용촉진지공단, 과학기술원, 국민연금관리공단, 대한석탄공사, 의료보험관리공단, 국립공원관리공단

③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강화

-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제도 도입·시행
 - 5개사를 선정, 이중 공사중인 3개소에 118억원 융자결정
(지원 : 편의시설 2억원(무상), 건축비50%·50억원융자)
※ 중증장애인 105명, 경증 246명등 351명 취업기회 제공
 - '97년에 5개소 추가선정('98년까지 15개소 설립)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도 도입 · 시행
 - ※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 · 원료 ·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거나 하청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감면
-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
 - 기준고용율 초과시 1인당 월 173천원 지급(97 : 190천원)
 - 장애인 신규고용시 2년간 최저임금의 40-80%의 보조금 지원 ('96년 97개소 354명,790백만원 지급)
- 사업체 시설 · 장비 개선등 유 · 무상 지원 확대
 - 무상지원금 13개소 280백만원, 융자지원금 55개소 6,212백만원
-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융자지원(1,646명 8,194백만원)
 - '97 : 1800cc 이하차량 제한규정 철폐, 모든 통근용차량에 지원

④ 장애인 직업수행 능력개발 및 사기양양

-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시설 · 장비 및 훈련보조금 지원
- 훈련장애인에 대해 훈련장려금(준비금, 수당) 지원
-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신설('96.5, 7개 시 · 도) 및 제13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('96.10 일산직업전문학교)
- 기능장애인 격려 및 근로의지 고취
 - 『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』 장려금지급 제도 도입 (입상자에게 금 40만원, 은 35만원, 동 30만원 매년 시상)
- 장애인 직업재활 홍보드라마 『두바퀴로 여는 세상』 제작방영등

훈련장애인 지원 내용

- 훈련보조금(민간훈련기관) : 1인당월 279천원(연간335만원)
- 훈련장려금(훈련생) : 1인당월 195천원(연간234만원)
- 기능자격취득수당(훈련생) : 1인당 5만원
- 자격 취득성과수당(교사) : 10~30만원(자격취득율에 의함)
- 취업알선 수당(교사) : 1인당2만원

5) 장애아동 특수교육

- 특수교육기회 확대
 -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(109개교)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특수 학급 운영 (2,819개교)
 - 중도장애인 재택 순회교육 실시 : 121학급 735명
- 특수학교 직업교육 강화
 - 전공과 설치 · 운영 : 8개교
 - 사립특수학교에 직업보도실 신축지원 : 20개교
- 특수교육의 내실화
 - 통합교육 지도 · 자문교사 배치 및 학습자료 개발 · 보급등
- 특수교육전담 행정조직 강화
 - 교육부에 「특수교육담당관실」 독립설치 ('96.7.4)

6) 기타사항

- 장애인복지전담행정조직 강화
 -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관련 업무전담 국장급 「심의관」 설치 (심의관 밑에 「장애인제도과」「재활지원과」 2개과를 설치하는 자체 개정안 부처협의중)
-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
 - 장애인복지관 : 현재 41개소 → '97년 55개소
 - 재가복지봉사센터 : 현재 24개소 → '97년 28개소
 - 주간 · 단기 보호시설 : 현재 5개소 → '97년 10개소
-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
 - 현재 보수수준은 국·공립 시설의 69%수준이며 예산지원인력은 법정배치기준인원의 64%에 불과
→ '97년에 보수는 국·공립 대비 77%수준, 종사자수는 법정기준 인원 대비 70% 수준 확보